

# kiri Weekly

2011.12.19 제161호

## 이슈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향

## 포커스

보험회사 가계대출 증가추세의 특징과 시사점

## 금융보험 해설

유럽연합과 유로존

## 국내금융 뉴스

11월 수출입물가지수 전월대비 하락

금감원, 보험계약 유지율과 설계사 정착률 발표

비은행 금융회사, 가계대출·다중채무 위험 급증

2011년 3/4분기 생계형 가계대출 9.1% 증가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결과의 주요 내용

정부, 201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 해외금융 뉴스

세계 \_ 세계경제포럼, 금융발달지수 발표

북미 \_ 국제결제은행(BIS), 미국 양적완화정책 효과 평가

\_ 12월 FOMC 회의 결과

유럽 \_ 유럽연합(EU) 정상 합의, 재정동맹 실행 전망 불투명

\_ OECD, EU 청년실업 대책 촉구

\_ 유럽 은행, 내년 6월까지 1,147억 유로 자본 확충해야

\_ ECB, 기준금리 1.0%로 인하

일본 \_ 일본기업, 엔고 영향으로 M&A 실적 세계 3위로

중국 \_ 해외자본의 중국보험시장 점유율 20% 초과

\_ 11월 중국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상승률 본격 하락 전망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향 - 독일 리스터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이상우 선임연구위원

## 요약

- 현재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제도의 포괄성(가입률과 유지율)과 급여의 적절성, 그리고 소득효과 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노후소득보장의 다층체계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함.
  
- 독일의 리스터연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형 개인연금제도로 주로 저소득계층과 다자녀가족의 사적연금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공사연금제도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독일은 정부 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주로 중산층 이하 저소득계층 등에 집중되는 금융감독청 인증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을 2002년에 도입하여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개인연금 활성화를 기하고 있음.
  - 리스터연금 도입 이후 2002년 337만 명에 불과하던 가입자가 2010년 1,240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2009년 말 기준 독일 가입 대상자의 약 1/3 이상이 가입함.
  - 특히, 저소득계층 및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집중 지원함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중이 높아 리스터연금 도입이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측면에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한 소득 이하인 계층에 인증된 개인연금 가입 시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 인증제 개인연금은 원금보장형 및 종신연금 등 엄격한 세제적격 상품의 요건이 필요함.
  -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되, 장기적으로는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함.

## 1. 검토배경



■ 현재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제도의 포괄성(가입률과 유지율)과 급여의 적절성, 그리고 소득효과 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는 2000년 연금제도의 과세체계 개편 시점을 전후로 1994년에 개인연금저축, 2001년에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제도가 도입 및 운용되고 있음.
-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이 12.2%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동 가입률이 크게 미흡한 수준임.
  - 또한,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도 7.5%에 불과해 OECD 등에서 권고하는 소득대체율(10% 이상) 수준을 하회함.

〈표 1〉 개인연금 가입률 비교

구분	영국	미국	독일	한국
개인연금 가입률	18.1%	24.7%	29.9%	12.2%

주: 15~64세 경제활동인구 대비.

자료: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 이에 노후소득보장 다층체계 구축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개인연금 가입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저축이 절세상품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함.

- 개인의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고소득층의 가입니즈가 높고, 누진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 소득공제 효과가 커져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유인 효과가 낮음.

〈표 2〉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비중

구분	사적연금 비중	공적연금 비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우리나라	32%	68%	11.1%
P7국가 평균	65%	35%	15.4%

주: 1) P7국가는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가 해당됨.

2) 공사연금 비중은 2009년 12월 말 기준이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0년 기준임.

자료: Towers Watson, UN 인구통계국, 금융감독원.

-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공제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 유인이 낮음.
- 따라서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표 3〉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가구 비중

소득계층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구성비(%)	1990	7.1	75.4	17.5
	2010	12.5	67.5	20.0
소득계층 구분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	중위소득의 50~150% 가구	중위소득의 150% 초과 가구

주: 소득계층 구분은 OECD 기준에 의함.  
 자료: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

- 따라서 보고는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 제고와 노후소득보장체계 사적부분의 한 축인 개인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독일의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 및 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2.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의 변화와 리스터연금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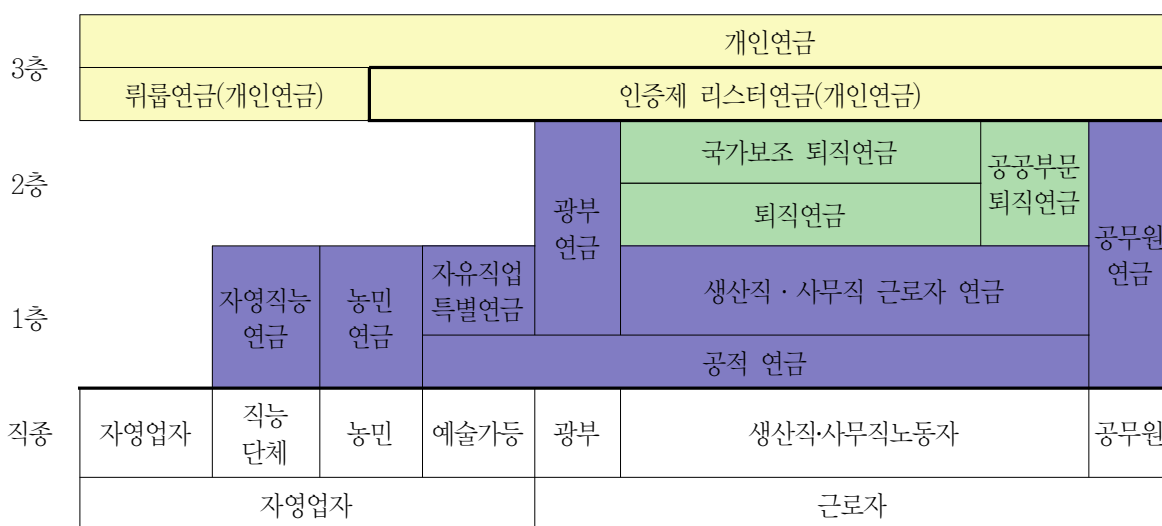


### 가. 공적연금 위주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의 변화

-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위주의 노후소득보장에서 다층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으로 전환됨.
- 제1층인 공적연금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 산업별, 직업군별로 분립되어 다원적이면서도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 국민연금제도는 직종에 따라 생산직 연금, 사무직 연금, 광산노동자 연금으로 분리·운영되며, 공무원·법관·직업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농민연금, 예술가·문학가·자유기고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직업자 특별연금 등이 존재함.

- 제2층은 퇴직연금으로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 재정지원과 함께 퇴직연금 규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음.
- 제3층의 경우 개인연금이 해당되는데, 연금개혁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이 전격 도입됨에 따라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그림 1〉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 독일은 2001년 이후 공적연금의 급부수준이 삭감됨에 따라 연금 결손분 보충을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 연금의 역할 강조 및 활성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함.
- 독일은 노후소득보장 중 공적연금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1997년부터 공적연금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 개혁은 2001년 이후 이루어짐.

〈표 4〉 연금개혁 이전의 독일 공적연금 비중(1999년 기준)

구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공적연금(1층)	85%	50%	42%	65%
사적연금(2·3층)	15%	50%	58%	35%

## 나. 연금개혁을 통한 리스터연금 도입

- 독일은 급여수준 하향조정,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1992년 공적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와 함께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 경기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 등으로 연금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를 추진하기에 이룸.
  - 즉,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단계적 인하를 위하여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를 추진하고 연금보험요율의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여 2020년까지 20%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결론지음.
  -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퇴직연금에 대해 근로자의 조건부 법적 청구권 인정, 수급권 보장을 위한 지급보증제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또한,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방금융감독청 인증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도입을 통해 중산층 이하 저소득계층 등의 개인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함.
  -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은 2001년에 제정된 「노후재산형성 보완법」<sup>1)</sup>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동 연금명은 전 노동부 장관 이름인 Walter Riester에서 유래함.
  - 따라서 독일은 현재 리스터연금, 2005년 1월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뤼룹연금(Rürup Plan), 기존 생명보험회사의 개인연금 등 3가지 형태의 개인연금이 있음.

## 3. 독일 리스터연금의 운용시스템



### 가. 가입대상 및 보조금

- 공적연금의 급여축소 보완을 위해 도입된 리스터연금의 경우 그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당연 가입자와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음.

1) Altersvermögensergänzungsgesetz: Retirement Savings Supplementary Law.

- 가입대상자는 독일 「소득세법」<sup>2)</sup>에 따라 근로자, 수공업자·예술가 등 영세 자영업자, 공적연금에 가입한 농업인, 자녀양육자, 실업보험 수급자, 요양 및 간병 환자, 군인 및 공익요원 등 공적연금 당연가입자임.
  - 사용자가 보험료 납입에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 등도 가입대상에 포함됨.
-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경우에도 가입자가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해당 배우자는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리스터연금의 정부 세제지원은 사전적인 의미의 보조금과 사후정산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취하는데, 보조금은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한 기본보조금과 해당 자녀를 위한 자녀보조금으로 구성됨.
  -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면서 보험료에 포함되므로 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는 전체 납입보험료에서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임.
- 리스터연금의 경우 가입자 소득에 비례(2008년 이후 최소기여율 4%)해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나 정부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 동 보조금은 2002년 도입 후 기본보조금 및 자녀보조금의 점진적 인상에 따라 2008년 이후 각각 154유로와 185유로에 이르렀으며, 연간 납입할 최소보험료 및 최대보험료 수준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됨.
    - 또한, 2008년 이후 저연령층 연금가입 확대 및 출산장려를 위해 저연령층 가입자에게 200유로의 보조금과 신규 출생자녀에게 300유로의 보조금 지급제도를 각각 신설함.

2) 「소득세법(EStG)」 제10a조.

〈표 5〉 리스터연금 보조금 및 소득공제

구분	2002. 3	2004. 5	2006. 7	2008 이후
기본보조금 한도액(1인당)	38유로	76유로	114유로	154유로
자녀보조금 한도액(자녀 1인당)	46유로	92유로	138유로	185유로 <sup>1)</sup>
보조금을 받기 위한 최소기여율 (연간소득 기준)	1%	2%	3%	4%
정부보조를 위한 최대기여금액	525유로	1,050유로	1,575유로	2,100유로
소득공제액	525유로	1,050유로	1,575유로	2,100유로

주: 1) 2008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300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됨,  
자료: BMAS(사회보험청).

## 나. 보조금 운영시스템

■ 보조금 운용시스템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수가 많을수록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되므로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형태임.

- 연간소득 5,000유로 이하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에서 지원금 비율이 92% 수준임.
- 이에 비해 연간소득 10만 유로 이상의 독신인 경우 44% 수준으로 저소득다자녀 계층을 위한 지원금 혜택이 고소득무자녀(또는 독신) 계층보다 현저히 높음.

〈표 6〉 소득·가족 구성원 별 리스터연금 보험료 구성

(단위: 유로)

〈예 1〉 두 자녀를 가진 부부(2008년부터)

전년도 표준소득	기본보조금	자녀수당	본인부담 보험료	전체 납입보험료	추가적 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
5,000	308	370	60	738	-	91.9
15,000	308	370	60	738	-	91.9
25,000	308	370	322	1,000	-	67.8
40,000	308	370	922	1,600	-	42.4
50,000	308	370	1,322	2,000	-	33.9
75,000	308	370	1,422	2,100	-	32.3
100,000	308	370	1,422	2,100	14	33.0

〈예 2〉 무자녀, 독신인 경우(2008년부터)

전년도 표준소득	기본보조금	자녀수당	본인부담 보험료	전체 납입보험료	추가적 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
5,000	154	-	60	204	-	75.5
15,000	154	-	446	600	-	25.7
25,000	154	-	846	1,000	141	29.5
40,000	154	-	1,446	1,600	432	36.6
50,000	154	-	1,846	2,000	672	41.3
75,000	154	-	1,946	2,100	777	44.3
100,000	154	-	1,946	2,100	777	44.3

자료: 닛쎄이基礎研究所(2007).

■ 또한, 리스터연금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는데, 동 혜택은 2,100유로(2008년 이후)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구조로 이루어짐(〈표 5〉 참조).

- 동 소득공제 혜택으로 고소득층은 보조금과 소득공제의 이중혜택을 받는 반면,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층은 보조금만 지급받게 되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리스터연금 보조금에서는 소득세 감면액이 보조금 액수를 초과할 경우 독일 국세청이 전체 소득세 감면액에서 동 보조금만큼을 차감하여 환급하도록 제한함.
  - 결과적으로 고소득 가입자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 혜택만 받게되는 구조임.<sup>3)</sup>

■ 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들 대부분을 연금 수령 시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미래에 낼 세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에 불과함.

- 이에 반해 저소득층은 보험료 납입 시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혜택을 보는 한편, 장래 연금 수령 시에도 소득수준(공적연금 포함)이 면세점 이하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결과적으로 리스터연금은 가입자가 공적연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노후소득을 위한 자조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출산장려를 통해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도 기여함.

3) 김원섭·강성호(2007),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발표자료.

## 다. 리스터연금 인증 기준

■ 독일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상품이 노후소득보장 외의 목적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연방금융감독청이 심사 및 인증한 경우에 한해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함.

- 급부가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노후소득보장 외의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부지급이 60세 이후이거나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서 개시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 30% 이하로 허용된 일시금 지급범위 이외의 급부는 한 달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 종신연금 형태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 연금수급 시점의 전체 연금 지급액은 전체 보험료 적립금(본인부담금+정부보조금)을 보장하는 원금 보장형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 연금지급에 대한 성별 차이 금지, 분기마다 해약과 연금수급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납입액과 관리비 등 연금계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 보험회사의 사업비 이연상각은 연금가입자의 단기간 내 타 보험회사로 이동 또는 해약 시 납입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5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하며, 계약의 일시정지, 해약, 이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 또한, 자본시장 변동으로 가입자 적립자산의 과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감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로 제한하는 등 다음과 같은 리스터연금의 인증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연금의 급부금이 제3자로 이전압류 대상 금지, 가입자 본인 거주 목적의 주택구입자금을 위해 1만~5만 유로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대출후 2년부터 연금수급 시점까지 상환.
- 연금지급은 기본적으로 연금가입자로 제한함으로써 상속이 불가능하며, 동 연금이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되거나 외국에 거주할 경우 정부보조금 등의 세제혜택을 환수하며, 중도해약 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수익금과 본인부담금을 과세대상으로 함.
- 연금계약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경우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적립금을 새로운 연금 상품으로 이전 가능하나 이 경우 별도의 해약금 부과 가능함.

## 4. 독일 리스터연금의 운영 성과



- 리스터연금상품으로 연방금융감독청에서 적격인증을 받은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형, 은행의 예금형, 투신사의 투신형 상품이 있음.

〈표 7〉 리스터연금의 적립상품 유형

상품유형	주요 특징	계층
생보사 연금보험형	• 적립과 보험을 결합한 상품, 최저보증이율 설정이 요건, 신계약비 등 부대비용이 높음	저·중령층
은행 예금형	• 확정금리형 예금, 리스크·수익이 모두 낮음, 수수료 낮음	저·중·고령층
투자신탁의 투신형	• 투자신탁상품, 가입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상품을 선택, 최저보증이율 없음	리스크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연령층

자료: 損害保險總合研究所(2009. 3).

- 리스터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 제도의 복잡성과 낮은 수익률 등으로 가입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가입대상자의 약 1/3 이상이 가입하는 등 급성장함.

〈표 8〉 리스터연금 금융회사별 보유계약 건수 추이

(단위: 천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9
생보사	3,047	3,486	3,661	4,797	6,468	9,349
은행	150	197	213	260	351	570
투신	174	241	316	574	1,231	2,443
합계	3,371	3,924	4,190	5,631	8,050	12,400

자료: BMAS(사회보험청)

- 2002년에는 가입대상자 4,200만 명 중 가입자가 337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인 보조금 상향조정 및 신규 출생자녀 등을 위한 보조금 신설에 힘입어 2009년에는 1,240만 명 이상이 가입하는 등 약 3.7배 성장함.
- 2009년 기준 전체 금융권 리스터연금 보유계약 건수 중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이 전체의 75.4%를 차지함.

- 또한, 리스터연금은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대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공적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약 3만 유로이고 2004년 리스터연금 가입자 중 연간소득 3만 유로 이하 가입자 비율이 70.8%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저소득층의 가입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독일은 고령화 대비를 위한 공적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축소하되, 공적연금 부족분을 인증제 개인연금(리스터연금) 등을 통해 보전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노후안정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5.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도 급속한 인구고령화 진전에 대비하여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는 한편, 기업과 개인의 역할은 점점 증대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고령화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개인연금 가입 시 세제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사적연금의 활성화 정책으로 수혜를 보는 대상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고소득층일 것이므로 저소득층을 고려하지 않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은 소득 양극화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 물론, 독일식 리스터 연금제도 도입은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 자활(자립)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가입 증대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독일처럼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연금을 설계하고 종신연금으로 지급방식을 의무화하며, 공적연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급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또한,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이하 소득자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되, 장기적으로는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도 요구됨.
- 결론하면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인 개인연금의 노후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독일식 인증제 개인연금제도의 도입 검토가 절실히 요구됨. [kiri](#)